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비고: 다음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해당 호에 따른 지역에 둘 수 있다.

1. 경북대학교: 경상북도
2. 공주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한밭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3. 부산대학교: 경상남도
4.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5. 한국교통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2. 교육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광역시	청주교육대학교	충청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		

비고: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

3. 삭제 <2022. 11. 8.>

4. 삭제 <2013.3.23>

5. 특수학교

학교명	소재지	과정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경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우진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